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

2022. 6.

**푸 른 도 시 국**

# 푸른도시국 '22년 2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

##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 □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 1건 318,932천원 (2022.4.7.)

- 예비비 사용 사유 : 민사소송(부당이득금청구) 따른 공탁금 지급
- 소송개요
  - '20. 7월, 원고(임○○)는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1977 ~ 1978년 서대문 고은산 일대 무허가 건물을 철거 후 무단으로 조림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본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금청구)을 제기하였음.
  - 당시 서울시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조림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무허가 건물 철거로 나대지화된 임야에 산림재해 예방 차원의 복구작업이었으며, 등산로 또한 과거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길을 서대문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정비·관리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공원으로 조성하여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음.
  - '22. 1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원고의 토지에 조림 및 등산로를 설치하여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점유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청구 일부인용을 선고하였음.
  - 서울시는 '22. 1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의 토지가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조림의 대상지였다는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의 감정평가가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되어 부당이득금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항소장을 제출함.

- '22. 3월 원고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판결금액에 대한 서울시 시금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함.
- 1심 판결의 결과는 예산 편성시 예측이 어려웠으며, 서울시 시금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2. 4월 긴급하게 예비비 318,932천원을 배정받아 공탁비용으로 집행함.
- 향후 항소심 수행(변론기일 : '22. 7. 6. 예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